﻿

***AI봇이 양육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로직***

1.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공포시 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2.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소득이고,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

3.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

4.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는 비율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비율표에 따라 양육비 산정

5. 양육비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감요소들을 고려

①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7.9% 가산, 농어촌인 경우16.5% 감산.

② 자녀가 1인인 경우 6.53% 가산, 3명 이상인 경우 21.7% 감산.

③ ​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가산. 다만. 그 가산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④ 부부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 및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 다만, 가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⑤ 부부의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가산 혹은 감산. 다만, 감산 가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⑥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감산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 감산된 부분만큼을 가산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 및 감산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액, 소득,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 변제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고 감산. 이 경우에도 전문가 상담 필요

⑦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부부합산소득 0~199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기본양육비 지급 의무

***[적용사례]***

① 가족관계 : 부부와 슬하에 만15세인 딸 1명과 만8세인 아들 1명이 있는 가족관계

② 소득 : 처는 월평균 180만 원, 남편은 월평균 270만 원

③ 자녀들의 양육자 : 처

<계산>

① 15세 딸 표준양육비 : 1,402,000원

② 8세 아들 표준 양육비 : 1,140,000원

③ 표준양육비 총액 : 2,542,000원(=1,402,000원 + 1,140,000원)

④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총액을 확정하되, 가감산 요소가 없다면 표준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

⑤ 비양육자인 남편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 원 /(180만원 +270만원) × 100]}

⑥ 따라서 이혼 후 남편이 처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원(=2,542,000원 × 60%).

***[유의사항]***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만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위 기준표 그대로 판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특히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더더구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